

대구지방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가단1155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4.

판 결 선 고 2022. 5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164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2. 13.부터 2022. 2. 1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